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10: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원회의원(11명)

■참석의원 : 송영출, 천성오, 이정훈, 김재요, 김진곤, 김태석, 김태훈, 한형석, 신희연 (9명)

■불참의원 : 이재현, 고민석

4. 안 건

가. 규정 개정(안)

1) 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내규 개정(안)
2)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개정(안)
3) 강의평가 규정 개정(안)
4)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5) 계약직원(기간제, 무기) 임용 내규 개정(안)
6)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안)
7) 직제 규정 개정(안)
8) 정보과학교육원 원칙 개정(안)
9) 정보과학교육원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10)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개정(안)
11)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개정(안)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규정 관련 의결사항】

▪ 의결내용

- **규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위 규정 근거 서술시 외부 법령 등을 먼저 서술하고 내부 정관, 학칙 등을 이후 서술하기로 의결한다.**
- **규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하 ~ 이라고 한다"라고 후술할 때 "이라고 한다"를 모든 규정에서 생략하여 서술하기로 의결한다.**
- **규정의 표현에서 외부 법률을 서술할 때 "법령"으로 서술하기로 의결한다.**

【규정 개정】

1) 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내규 개정(안)

- 기획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시험종류 추가(IELTS)
- 위원장과 위원들은 외국어시험 면제 시험종류 추가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2)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개정(안)

- 기획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연구등록기간 단축불가자 대상 범위 설정
  - 편입생, 재입학생, 학사경고자의 연구등록기간 단축을 불허
- 의장과 위원들은 "단"의 중복표현의 문구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2조5호를 신설하여 수정하기로 하다.
- 의장과 위원들은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연구등록 단축신청을"의 표현을 "연구등록기간 단축신청을"로 "기간"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3) 강의평가 규정 개정(안)

- 기획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u-Campus 및 외래강사 명칭 변경
  - 강의평가 제도 개선 내용 반영 : 선택 문항과 소규모 강의 관련 내용 수정
- 위원장과 위원들은 개정 취지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4)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기획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정년퇴임수당을 직원보수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지급의 근거를 확보
  - 행정팀장 직무수당에 5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
- 의장과 위원들은 정년퇴임수당의 지급 범위에 대해 묻고 답하다.
- 위원장과 위원들은 개정 취지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5) 계약직원(기간제, 무기) 임용 내규 개정(안)

- 기획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무기 계약직원 직무분야 입학처(입학사정관실) 인원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입학처 (입학사정관실)	5명	7명	

- 의장과 위원들은 별표 1의 "※ 본 내규 제정일을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원에 한하여 적용함."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다.
- 의장과 위원들은 신설되는 별표 1의 "※ 단, 무기 계약직원 인원 변경은 국고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함."의 문구에 대해 상호 의견을 개진한 결과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삭제보다는 유지후 상정 부서에서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 의장과 위원들은 **규정 개정전 진행된 입학처의 절차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획처장에게 상기 사항을 전달하여 개선하도록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6)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안)

-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조건부합격 유예기간 변경
  - 직권휴학 제도 신설 및 졸업요건 강화
- 의장과 위원들은 직권휴학 제도의 신설의 상위법 위반여부, 이중학적 상황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 및 의견을 구하다.
- 의장과 위원들은 유학생 관리에 직권휴학제도의 신설 취지에 동의하다.
- 의장과 위원들은"단, 특별한 경우 총장의 재가로 외국인 학생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에서 **"특별한 경우 총장의 재가로"의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7) 직제 규정 개정(안)

-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해외 대학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주관할 주임교수 임명 근거 마련
- 의장과 위원들은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문구를 재검토하여 개선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8) 정보과학교육원 원칙 개정(안)

- 기획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규정 명칭 변경
  - 위원회(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임용심사위원회) 신설

▪ 의장과 위원들은 개정사유와 취지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9) 정보과학교육원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기획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규정 명칭 변경
- 위원회(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임용심사위원회) 신설

▪ 의장과 위원들은 개정사유와 취지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0)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개정(안)

▪ 기획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개정된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 규정 반영

▪ 의장과 위원들은 개정사유와 취지에 동의하다.

▪ 제14조(공결 및 유계결석)1조2항의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11)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개정(안)

▪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규정 명칭 변경
- 위원회(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임용심사위원회) 신설

▪ 의장과 위원들은 개정사유와 취지에 동의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6. 폐회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6월 11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송 영 출	(서명)
부 의 장	천 성 오	(서명)
평 의 원	김 태 석	(서명)
평 의 원	이 정 훈	(서명)
평 의 원	김 재 요	(서명)
평 의 원	김 진 곤	(서명)
평 의 원	김 태 훈	(서명)
평 의 원	한 형 석	(서명)
평 의 원	신 희 연	(서명)
평 의 원	이 재 현	(서명)
평 의 원	고 민 석	(서명)